진주 정촌올리움 국민임대 입주자격 완화 모집 _ 2020. 07. 15. 공고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및 진주정촌올리움 관리소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2020.07.15.(수)이며,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 **주택 및 자산 : 주택 완화(소형, 저가주택 허용), 총자산 기준 배제,** ※ 소형·저가주택 : 60㎡이하 + 8천만원 이하
 - 소득 : 조건부 완화. 1인가구당 소득을 적용하되 소득 150%초과자도 130%초과자와 동일조건으로 계약체결
 - 자동차 : 자동차가액 2,961만원 이하
 - **단독세대주 신청 가능**
 - 계약 체결 후 2차(4년) 임대차 갱신 계약체결 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임대 입주자격 적용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단, 이번 모집의 경우에 한하여 자산을 배제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2020.07.15. 진주정촌올리움 국민임대 입주자격 완화 모집	신청문의 전화번호
주택관리번호	**2020000873**	055-924-0805

- **신청 시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은행과 순위확인서상 납입회차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마감시간(16:00)에는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접수시간(10:00~16:00) 내 여유를 두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진주정촌올리움	경남 진주시 삼일로 12.(예하리. 정촌올리움)	6개동 794호	2020.03.27.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공급형	주택유형	세대당 계약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건설호수 794세대 (청년30 포함)	해당동	모집호수 입주자	예비자 일반	예비자 청년	구조/난방
34㎡	34A 34B	34.15 34.16	14.0191 14.0122	18.4049 18.4103	66.5740 66.5825	160(24) 42	104,105, 106	-	50	10	철근콘크리트 벽식 / LNG
38㎡	38A	38.45	15.5361	20.7223	74.7084	36(6)	104,105	2	10	3	
44㎡	44A 44B	44.5069 44.5058	17.3889 17.3890	23.9861	85.8819 85.8809	175 20	104,105	40	60	-	
50㎡	50A 50B	50.7059	19.4878	27.3275	97.5212	39 9	104,105, 106	20	15	-	
59㎡	59A	59.9613	23.1443	32.3157	115.4213	313	101,102, 103,104	120	60	-	

- **별도의 모델하우스, 샘플하우스가 없으므로 단지여건 등 주택 내외 환경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집세대수는 계약해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신청하였으나, 공가가 발생할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어 추첨에 의해 동호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공급형별(㎡)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34㎡	**기준소득 이내**	**8,800,000**	**880,000**	**7,920,000**	**136,600**	16,000,000	**24,800,000**	**56,600**
	110%이하	9,680,000	968,000	8,712,000	150,200		25,680,000	70,200
	110%초과 130%이하	10,560,000	1,056,000	9,504,000	163,900		26,560,000	83,900
	130%초과	12,320,000	1,232,000	11,088,000	191,200		28,320,000	111,200
38㎡	**기준소득 이내**	**13,900,000**	**1,390,000**	**12,510,000**	**172,300**	20,000,000	**33,900,000**	**72,300**
	110%이하	15,290,000	1,529,000	13,761,000	189,500		35,290,000	89,500
	110%초과 130%이하	16,680,000	1,668,000	15,012,000	206,700		36,680,000	106,700
	130%초과	19,460,000	1,946,000	17,514,000	241,200		39,460,000	141,200
44㎡	**기준소득 이내**	**18,700,000**	**1,870,000**	**16,830,000**	**203,700**	24,000,000	**42,700,000**	**83,700**
	110%이하	20,570,000	2,057,000	18,513,000	224,000		44,570,000	104,000
	110%초과 130%이하	22,440,000	2,244,000	20,196,000	244,400		46,440,000	124,400
	130%초과	26,180,000	2,618,000	23,562,000	285,100		50,180,000	165,100
50㎡	**기준소득 이내**	**22,600,000**	**2,260,000**	**20,340,000**	**268,600**	32,000,000	**54,600,000**	**108,600**
	110%이하	24,860,000	2,486,000	22,374,000	295,400		56,860,000	135,400
	110%초과 130%이하	27,120,000	2,712,000	24,408,000	322,300		59,120,000	162,300
	130%초과	31,640,000	3,164,000	28,476,000	376,000		63,640,000	216,000
59㎡	**기준소득 이내**	**26,100,000**	**2,610,000**	**23,490,000**	**319,000**	38,000,000	**64,100,000**	**129,000**
	110%이하	28,710,000	2,871,000	25,839,000	350,900		66,710,000	160,900
	110%초과 130%이하	31,320,000	3,132,000	28,188,000	382,800		69,320,000	192,800
	130%초과	36,540,000	3,654,000	32,886,000	446,600		74,540,000	256,600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하며, 2회차 갱신 계약부터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소득초과 소명 및 초과비율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이 변동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의 임대조건은,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 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현장 접수(토,일요일,공휴일제외)

차수	신 청 접 수	당첨발표	계약체결	현장방문 신청 장소 및 주소
6-1차	2020년 7월 22일, 29일.(수). 2일간	2020년 10월 19일(월)	2020년 10월 29일~30일 (목,금)	경남 진주시 삼일로 12(예하리) 진주 정촌올리움 관리사무소 (☎ 055-924-0805)
6-2차	2020년 8월 19일, 26일.(수). 2일간	2020년 11월 16일(월)	2020년 11월 26일~27일 (목,금)	
6-3차	2020년 9월 2일, 9일.(수). 2일간	2020년 11월 30일(월)	2020년 12월 10일~11일 (목,금)	

- 현장접수는 신청접수 일자에만 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입니다.(점심시간 제외)**
-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후 홈페이지 및 개별 계약안내 연락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및 계약체결일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 할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예비자 모집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0.07.15)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동차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내국인)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소형·저가 주택 제외)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 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신청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소득 150%초과자 계약체결 가능.**
총자산 배제. 자동차는 **자격완화 조건 2,961만원 이하여야 함.**
(2회차 임대차 갱신계약체결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국민임대 입주자격 적용됨).

▪ **세부기준**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th></tr>
<tr><td colspan="2">소 득</td><td>
<table>
<tr><th>가구원수</th><th>월평균소득기준</th><th>참고사항</th></tr>
<tr><td>1인가구</td><td>(1,851,603)원이하</td><td rowspan="6">*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5,774,868원), 8인가구(6,233,879원)</td></tr>
<tr><td>2인가구</td><td>(3,056,866)원이하</td></tr>
<tr><td>3인가구</td><td>(3,938,828)원이하</td></tr>
<tr><td>4인가구</td><td>(4,358,439)원이하</td></tr>
<tr><td>5인가구</td><td>(4,856,848)원이하</td></tr>
<tr><td>6인가구</td><td>(5,315,858)원이하</td></tr>
</table>
</td></tr>
<tr><td rowspan="2">자 산</td><td>총자산가액</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백만원 이하 => 자격배제</td></tr>
<tr><td>자동차가액</td><td>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자격완화2,961만원</td></tr>
</table>

* 입주자격 중 주택, 자동차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최초계약 시 자산은 자격완화 및 제한 배제로 2회차(4년) 갱신계약 시 적용되므로 참고]**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산정방법</th></tr>
<tr><td colspan="2">소득

(최초계약 시 할증 미적용)</td><td>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td></tr>
<tr><td rowspan="2">총자산</td><td>부동산</td><td>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td></tr>
<tr><td rowspan="4"></td><td>자동차</td><td>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td></tr>
<tr><td>금융자산</td><td>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td></tr>
<tr><td>기타자산</td><td>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td></tr>
<tr><td>부채</td><td>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td></tr>
<tr><td colspan="2">자동차</td><td>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td></tr>
</table>

6. 선정기준

■ 일반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50세 이상 (1970년7월15일 이전 출생자)	만40세 이상 (1980년7월15일 이전 출생자)	만30세 이상 (1990년7월15일 이전 출생자)
② 부양가족 수(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진주시) 거주기간	5년 이상 (2015년7월15일 이전부터 거주)	3년 이상 5년 미만 (2015년7월16일~2017년7월15일 거주)	1년 이상 3년 미만 (2017년7월16일~2019년7월15일 거주)
④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1955년 7월15일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9년7월15일 이전부터)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 2점, 다. 36회 이상 : 1점

⑨ 사회취약계층 :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사람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당해 주택건설지역(진주시)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7. 청년 특별 공급

■ 청년 신청자격

구 분	신청자격
청 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 07. 15.) 현재 무주택자로서 ①~⑤를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1. 07. 16. ~ 2001. 07. 15.)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세대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함) ※ '청년 계층'의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합니다.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입 주 자 선정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15.) 현재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 · 2 · 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제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진주시) 또는 연접지역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함안군, 의령군, 산청군, 하동군)에서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쟁 시 선정기준	순위 → 추첨

8. 신청방법(현장방문 신청)

각 차수별 접수일자를 확인하시고,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리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는 신청접수 일자에만 가능하고, **청약 시간은 오전10시부터~오후4시이며(점심시간 제외),**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방문신청 접수장소(경남 진주시 정촌면 삼일로 12. 진주정촌올리움아파트)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리 신청할 경우 하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됩니다.

9.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모집 공고일(2020.07.15.) 이후 발급분 제출)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무주택서약서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과거이력포함 발급)**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진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으로 사회취약계층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간 육아지원세대 배점을 받고자 할 경우 관계 확인용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 입양관계증명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 입양관계증명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주민센터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제출>** ·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입국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외국인 등록 신청 후 등록 전인 경우 : 체류허가신청확인서 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0.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형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경남개발공사(www.gndc.co.kr)와 주택관리공단(www.kohom.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당첨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 계약안내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열쇠 수령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진주정촌올리움관리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제출)서류

공 통 서 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11. 공통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의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2회차 갱신시부터 적용)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th></tr><tr><td>10%이하</td><td>100%</td><td>11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tr><td>30%초과 50%이하</td><td>120%</td><td>140%</td></tr><tr><td>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td><td colspan="2">140%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td></tr></table>• 40㎡초과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자가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계속 단독 세대주인 경우, 2회차 갱신계약시에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하여야 하며, 순번 도래 시까지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신청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에는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안내	• 입주자 당첨 명단 및 계약 안내는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에 발표하며, 주택관리공단(www.kohom.or.kr)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 반드시 진주 정촌올리움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공급세대수의 일정비율만큼 예비당첨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합니다.
계약안내	• 당첨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안내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적격자로 인정될 경우에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계약 전에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지여건	• 본 단지의 주차장 형태는 지상층과 지하1층으로 구성되며, 모든 동은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먼지·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101동 옥탑에 위성안테나 1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있습니다. • 아파트 104동 106동 지붕층에 입주 후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 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지하주차장에 급속충전기 1개소와 완속 충전기 3개소가 설치되며, 휴대용 충전기 사용시 공용부위의 콘센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당해 아파트 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마감재 및 실내환경]**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창호 설치형 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에어컨 실외기** 발코니 갤러리창 쪽에 설치하여야 하며(**외부에 설치할 수 없음**), 시공되어 있는 에어컨 매립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급수급탕분배기,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신발장 후면에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9-9	경남개발공사 (609-82-06582)	㈜코오롱글로벌 광득종합건설(주)	-	한국건설관리공사

△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7. 15.

경남개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정촌올리움 관리소장

[붙임1]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무주택 서약서(국민)

[앞 면]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래의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자격(소형·저가주택 제외)**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②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18.12.11)되어 개정일 이후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서 약 자
(계약자) (서명 또는 인)

경남개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정촌올리움관리소장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남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경남개발공사·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남개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경남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남개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남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남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 . .

경남개발공사 사장 귀하

[붙임4] 위임장

위 임 장

(위임인)

성 명 : (인) ※인감날인

생년월일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 진주정촌올리움아파트 국민임대 (㎡) 입주자 모집 신청을 아래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수임인)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첨 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증(위임인,수임인)

경 남 개 발 공 사 사장 귀하

※ 위임장 작성시 유의사항

-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세대주)가 자필로 작성.

1.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사본은 위임장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으로 허위 위임장을 작성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